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 12. 15.
건설문화위원회

1. 심사 경과

제출자 : 김법기 의원외 7인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11월 10일

○ 회부일자 : 2009년 11월 13일

상정일자 : 제28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9. 12. 2 : 제1차 건설문화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 법 기 의원)

제안 이유

○ 「건축법」 개정(2009. 4. 1, 법률 제9594호)과 건축법시행령 개정 (2009. 8. 7, 대통령령 제21668호)으로 법률조문 개정으로

건축위원회 인원 증원 및 법률조문을 명확히 하여 건축행정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

- 건축위원회 인원을 10명 이상 30명 이내에서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증원하여 건축위원회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건축 관련 분쟁의 조정을 하도록 함.(안 제4조)
-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명칭 변경 (안 제3장)
-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영 제119조의2를 영 제119조의3으로 변경 (안 제17조)

3. 검토보고 요지

(건설문화전문위원 윤영해)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인원 증원 및 관련조문의 개정과 조정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일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 결과 : 원안 의결

7. 소수이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0명 이상 30명 이내”를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

“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제3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영 119조의2”를 “영 119조의3”으로 “충청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충청북도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18조본문,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4조본문, 제25조제2항단서·같은조 제3항 중 “조정위원회”를 각각 “전문위원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4조(구성) ①----- ----- <u>10명이상 30명</u> <u>이내</u> ----- ----- ② (생략) ③ (생략) 1. ~ 4. (생략) ④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u></p> <p>제17조(설치) ----- 영 제119조의2의 ----- ----- <u>충청북도건축분쟁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18조(기능) <u>조정위원회</u> ----- ----- 1. ~ 7. (생략)</p> <p>제19조(구성) ①<u>조정위원회</u> ----- ----- ②조 <u>정위원회</u> ----- <u>조정위원회</u> ----- ③<u>조정위원회</u> ----- ----- 1. ~ 4. (생략)</p> <p>제22조(간사 및 서기) ①<u>조정위원회</u> ----- ② (생략)</p>	<p>제4조(구성) ①----- ----- <u>10명 이상 50명</u> <u>이내</u> -----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3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u></p> <p>제17조(설치) ----- 영 제119조의3의 ----- ----- <u>충청북도건축분쟁전문위원회 (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p> <p>제18조(기능) <u>전문위원회</u> ----- ----- 1. ~ 7. (현행과 같음)</p> <p>제19조(구성) ①<u>전문위원회</u> ----- ----- ②<u>전문위원회</u> ----- <u>전문위원회</u> ----- ③<u>전문위원회</u> ----- ----- 1. ~ 4. (현행과 같음)</p> <p>제22조(간사 및 서기) ①<u>전문위원회</u> ----- ②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제23조(조정 신청 및 회의) ①조정위원회 ----- ②조정위원회 ----- ③ (생략) ④조정위원회 ----- -----</p>	<p>제23조(조정 신청 및 회의) ①전문위원회 ----- ②전문위원회 ----- ③ (현행과 같음) ④전문위원회 ----- -----</p>
<p>제24조(회의록) 조정위원회 ----- -----</p>	<p>제24조(회의록) 전문위원회의 ----- -----</p>
<p>제25조(비용부담) ① (생략) ② ----- ----- 조정위원회 ----- ----- 1. ~ 4. (생략) ③조정위원회 ----- ----- -----</p>	<p>제25조(비용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전문위원회 ----- ----- 1. ~ 4. (현행과 같음) ③전문위원회 ----- ----- -----</p>

관련법령 발취

□ 건축법 [일부개정 2009.4.1 법률 제9594호]

제4조 (건축위원회)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2009.4.1>

1. 이 법과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그 법령에 따른 심의를 갈음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한다)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4.1>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며, 중앙건축위원회에 두는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에 두는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로 구분한다. <개정 2009.4.1>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09.4.1>

③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4.1>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2009.8.5 법률 제21668호]

제119조의3 (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88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쟁의 조정등을 할 때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4조부터 제197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10.29]

[제1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의3은 제119조의4로 이동 <2009.8.5>]